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 회)	

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이상민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화학물질 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의 화학물질·살생물물질 및 화학제품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집행 기능을 환경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이관하면서 국립환경과학원의 정규정원 39명(8급 1명, 연구관 9명, 연구사 16명, 전문경력관 가군 3명, 전문경력관 나군 10명) 및 한시정원 3명(연구관 1명, 연구사 2명)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각각 이체하고,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며, 일부 직위의 직렬을 복수직렬로 변경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환경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및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 4. 4. ~ 4. 9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

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실장 및 정책관등 중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, 정책관등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.

제9조제3항에 제44호부터 제4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4. 빛 공해 등 생활환경 유해인자 및 실내 라돈(radon)의 관리에 관한 사항
45. 소음·진동의 관리에 관한 사항
46. 다중이용시설·공동주택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대책의 수립

제12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15조제3호 중 “화학물질의 유해성·위해성 평가 및 화학물질안전 예방”을 “환경유해인자 및 화학물질 위해성 평가”로 한다.

제1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화학물질”을 “환경유해인자·화학물질”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“화학물질의 분류·표시 및 유해화학물질”을 “허가·제한·금지 화학물질”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.

1. 환경유해인자·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 및 건강영향 조사·연구
제20조제1항 중 “연구직”을 “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”으로 한다.
제50조의4 중 “복구”를 “복구, 화학물질의 등록·관리 및 화학제품 승인”으로 한다.
제52조제3항 전단 중 “연구사”를 “6급 또는 연구사”로 한다.
제60조제4항을 삭제한다.
별표 4 중 총계 “1,870”을 “1,831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1,870”을 “1,831”로
하며, 3급 또는 4급 이하 “1,838”을 “1,812”로, 전문경력관 “14”를 “1”로
한다.
별표 8 제4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책임운영기관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
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표 1의2 중 화학물질안전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화학물질안전원	환경부	화학사고와 테러의 예방, 대비·대응 및 복구, 화학물질의 등록·관리 및 화학제품 승인에 관한 사항	144명
---------	-----	--	------

별표 1의2 비고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
하고, 같은 비고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화학물질안전원의 총정원 중 정원 3명(연구관 1명, 연구사 2명)은
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.

별표 1의3 중 화학물질안전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화학물질안전원	환경부	화학사고와 테러의 예방, 대비·대응 및 복구, 화학물질의 등록·관리 및 화학제품 승인에 관한 사항	144명
---------	-----	--	------

별표 1의3 비고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
하고, 같은 비고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화학물질안전원의 총정원 중 정원 3명(연구관 1명, 연구사 2명)은
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기후탄소정책실) ① (생략)	제9조(기후탄소정책실) ① (현행과 같음)
② <u>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.</u>	② <u>실장 및 정책관등 중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, 정책관등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.</u>
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③ ----- --.
1. ~ 43. (생략)	1. ~ 43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44. 빛 공해 등 생활환경 유해인자 및 실내 라돈(radon)의 관리에 관한 사항</u>
<u><신 설></u>	<u>45. 소음·진동의 관리에 관한 사항</u>
<u><신 설></u>	<u>46. 다중이용시설·공동주택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대책의 수립</u>
제12조(환경보건국) ①·② (생략)	제12조(환경보건국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③ ----- --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<u>빛 공해 등 생활환경 유해인자 및 실내 라돈(radon)의 관리에 관한 사항</u>	<u><삭 제></u>
5. <u>소음·진동의 관리에 관한 사항</u>	<u><삭 제></u>
6. <u>다중이용시설·공동주택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대책의 수립</u>	<u><삭 제></u>
7. ~ 17. (생 략)	7. ~ 17. (현행과 같음)
제15조(직무)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보전과 환경오염방지에 대한 조사·연구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.	제15조(직무) ----- ----- ----- -----.
1.·2. (생 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
3. 환경오염에 의한 건강영향 연구, <u>화학물질의 유해성·위해성 평가 및 화학물질안전예방</u> 등 환경건강 분야 관련 연구	3. ----- --- <u>환경유해인자 및 화학물질 위해성 평가</u> ----- ----- --
4. ~ 9. (생 략)	4. ~ 9. (현행과 같음)
제19조(환경건강연구부) ① (생 략)	제19조(환경건강연구부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② ----- --.
1. <u>화학물질의 등록·관리, 위해성 평가 및 환경유해인자 조</u>	1. <u>환경유해인자·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 및 건강영향 조</u>

<u>사 · 연구</u> 2. <u>화학물질의 인체 및 환경에 대한 독성 시험 · 연구</u> 3. (생 략) 4. <u>화학물질의 분류 · 표시 및 유해화학물질 지정 관련 조사 · 연구</u> 5. <u>화학물질에 대한 정보처리시스템 운영, 정보의 통보 · 공개에 관한 사항</u> 6. ~ 18. (생 략) 제20조(기후대기연구부) ① 기후대기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<u>연구직</u>으로 보한다. ② (생 략) 제50조의4(직무)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사고와 테러의 예방, 대비 · 대응 및 <u>복구</u>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. 제52조(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· ② (생 략) ③ 환경부의 소속기관(국립생물자원관 및 화학물질안전원은 제외한다)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	<u>사 · 연구</u> 2. <u>환경유해인자 · 화학물질</u>----- 3. (현행과 같음) 4. <u>허가 · 제한 · 금지 화학물질</u>----- ----- <삭 제> 6. ~ 18. (현행과 같음) 제20조(기후대기연구부) ① ----- ----- <u>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</u>-----. ② (현행과 같음) 제50조의4(직무) ----- ----- <u>복구, 화학물질의 등록 · 관리 및 화학제품 승인</u>-----. 제52조(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
--	--

중 2명(<u>연구사 2명</u>)은 기상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기상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 제60조(한시정원) ① ~ ③ (생략) ④ <u>살생물물질(殺生物物質)·살생물제품 승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8에 따른 한시정원을 환경부의 소속기관에 둔다.</u> ⑤ ~ ⑨ (생략)	-----<u>6급 또는 연구사</u>----- ----- ---. ----- ----- -----. 제60조(한시정원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 ⑤ ~ ⑨ (현행과 같음)
---	--

신 · 구 정원 대비 표

[별표 4]

환경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(제52조제1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1,870</u>	<u>1,831</u>	-39
일반직 계	<u>1,870</u>	<u>1,831</u>	-39
·	·	·	
·	·	·	
3급 또는 4급 이하	<u>1,838</u>	<u>1,812</u>	-26
전문경력관	<u>14</u>	<u>1</u>	-13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85